

국 토 교 통 부

훈계 · 시정 요구

제 목 국지도 ○○○터널 건설공사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관 련 자 ① 강원도 ○○과(전 ○○○○과) 지방○○○○○ ○○○

② 강원도 ○○과(전 ○○○○과) 지방○○○○○ ○○○

내 용

지방○○○○○ ○○○는 2012. 9. 27.부터 2014. 1. 9.까지 국가지원지방도 ‘○○○터널 건설공사’ ○○○○과장으로서 총괄책임자 업무를 담당하였고, 지방○○○○○ ○○○은 2011. 4. 18.부터 2014. 3. 12.까지 국가지원지방도 ‘○○○터널 건설공사’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강원도(○○○○과)에서는 공사비의 10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¹²⁷⁾받는 ‘○○○터널 건설공사¹²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2009년 3,000,000,000원, 2010년 8,200,000,000원 등 2013년까지 총 25,559,000,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2009. 2. 25.부터 2014. 2. 13.까지 공사비로 25,185,342,290원을 집행하였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3개월 이내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

127) 강원도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36호에 따라 총사업비(28,019,000,000원) 중 용지보상비(2,090,000,000원) 및 설계비(370,000,000원)를 제외한 25,559,000,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았음.

128) 강원도(○○○○과)에서는 2009. 2. 25. ○○○도 ○○시 ○○○구 ○○동 868에 있는 (주)○○○○(대표자 ○○○) 등 2개사와 총 공사부기금액 17,555,593,000원에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2. 27. 착공하여 2013. 3. 29. 준공하였음

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강원도에 보낸 ○○○터널 건설공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터널 건설공사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등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강원도(○○○○과)에서는 2009. 2. 25.부터 2014. 2. 13.까지 ‘○○○터널 건설공사’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25,559,000,000원을 교부받아 2009. 2. 25.부터 2014. 2. 13.까지 총 25,185,342,290원을 집행하고 373,657,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국토교통부에 반납하여야 하는데도

‘○○○터널 건설공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2013. 10. 25. 영월군 ○○○면에서 ○○○터널 개통이후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여 안전시설물(가드레일 등) 설치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이유로 2013. 11. 19. 강원도 ○○○○사업소○○지소에 재배정¹²⁹⁾하여 2013. 12. 19. ‘○○○터널 건설공사’ 사업구역 이외 지역인 ○○리 일원 가드레일 설치(252m) 공사비 19,091,000원으

129) 2013. 10. 29. ○○지소에서 강원도 ○○○○과(구 ○○○○○과)로 가드레일 5.2km, 미끄럼방지시설 1,120㎡ 등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를 요청하였고, 2013. 11. 19. 강원도 ○○○○과에서 예산부서를 통하여 ○○지소에 ○○○터널 공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재배정하여 ○○지소에서 가드레일 설치, 미끄럼방지시설, 충격흡수시설 설치 공사비로 집행하도록 하였음.

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비롯하여 [표]와 같이 ‘○○○터널 건설공사’ 사업구역 이외 지역의 기존도로 유지관리비 등으로 교부목적과 다르게 국고보조금 373,531,500원을 사용하였고 집행잔액 126,210원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았다.

[표] “기존도로 안전시설 설치비 집행 내역”

(단위 : 원)

연번	안전시설설치 집행내역	국고보조금 목적외 집행금액	지출일자
계		373,531,500	
1	○○지구 가드레일 설치	19,091,000	2013. 12. 19
2	○○지구 미끄럼방지포장	59,623,600	2013. 12. 19.
3	○○지구 가드레일 설치 및 도로포장	253,977,550	2013. 12. 27.
4	○○○터널외 2개소 충격흡수시설 설치(8개)	40,839,350	2014. 2. 13.

* 강원도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기존 도로의 가드레일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국고보조금 373,531,500원 및 집행잔액 126,210원을 합한 373,657,710원 상당을 국고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